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에 따른 행정예고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9월 27일

영 동 군 수

1. 목 적

재해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행정예고 기간 : 2022. 09. 27. ~ 10. 17.(20일간)

3. 의견제출 기간 : 2022. 09. 27. ~ 10. 17.(20일간)

4. 공고방법 : 영동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

5. 관련근거

가.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

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6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

지구명	위 치	지정내용			지정사유	비 고
		유 형	등 급	규 모		
매천2지구	영동군 영동읍 378-9번지 일원	붕괴 위험	D	L=200m H=50m	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	

7.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

지구명	사업시기	사업내용	비 고
매천2지구	2023년 ~	· 사면부 앵커보강, 기대기옹벽 설치 등 · 면정리 및 수평배수공 설치 등	

8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

- 가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- 나.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- 다.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- 라.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- 마.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9. 의견제출

- 가.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,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동군 안전관리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팩스(043-740-3909)
- 다. 제출기한 : 2022. 10. 17.까지
- 라. 보내실 곳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, 영동군청 안전관리과
- 마. 문 의 처 : 영동군청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(043-740-3934)
- 바. 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- 붙임 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 및 사진대지 각 1부.
2. 의견서 1부. 끝.

위치도 및 현황사진

지구명	매천2지구	위치	영동군 영동읍 378-9번지 일원	규모	L=200m, H=50m
-----	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	(전화번호:)
	의견		
기타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영 동 군 수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